

공정거래제도 운영에 대한 제언



공정위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자율준수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공정거래협회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주고 이런 사회분위기가 마련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공정거래질서를 빠른 시일내에 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협회 등 관련기관들이 노력할 부분으로 남겨두고 공정위는 보다 정책적인 면에 대해 힘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정재호

LG그룹 구조조정본부 경영정보팀 부사장

1. 서언

1981년 4월 1일 당시 신군부에 의해 상징적인 개혁정책의 하나로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제도는 지난 해 4월 1일로 법 시행 20주년을 맞았다.

공정거래제도는 이제 금년이 21년째로 완전히 성인이 된 셈이다.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 속도가 그랬듯이 우리 나라 공정거래정책의 발전과 공정거래 법질서의 정착 또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정거래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공정동우회’도 지난해 4월 1일 창립총회를 가져서 300여명의 회원들간 반가운 만남의 장이 되고 있으며

‘공정동우회’는 초대 이진설 회장님의 말씀대로 우리 나라의 경제질서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충만한 것이 되기를 바라는 이념적 동지들의 모임이 될 것이다.

이제 각 법무법인에서도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가 확보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공정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시장경제연구원도 발족하였다. 이 모두가 향후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훌륭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응모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정거래 당국자들의 회의를 통하여 한국의 발전된 공

정거래제도가 널리 소개되고 있고 여러 개도국들에게 우리의 공정거래제도가 참고모델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다. 또한 경쟁정책의 이슈가 뉴라운드의 주요과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OECD 경쟁정책위원회에서도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참여와 활약이 눈부시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제 막 성년이 된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운영 경험이 오래된 선진국과의 논의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향후 우리의 발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러시아, 일본 등 제국들과 경쟁정책당국자간 고위급 회의를 통하여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의 방향을 연구해 보는 것도 매우 유익한 활동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제도가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데는 그간 역대 공정거래위원회의 간부들과 직원들의 노력에 절대적으로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제 우리의 공정거래제도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제대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이제 성년을 맞은 공정거래제도의 운영방향에 대한 몇 가지 생각과 소박한 제언을 간략히 언급해 보고자 한다. 지면의 제한도 있고, 또 위원회 간부님들이나 학계 등 이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각자의 역할과 관련된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임으로 필자는 다른 분들의 내용과 겹치지 않을 내용, 즉 현실 경제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소회를 밝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특히 누구보다도 위원회의 발전을 바라는 사람의 하나로서 칭찬보다 솔직한 비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나름대로 지적하고자하니 필자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싶다.

2. 선진국에 비해서도 확고한 우리의 공정거래 위원회의 위상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제도는 지난 20년간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고 국민들의 사랑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일상의 기업경영 속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니 안 된다는 언급이 자주 나오고, 상대회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기업현장에서 볼 때 위원회 내부에서 생각하는 이상으로 공정거래정책은 현장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어느 선진국들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범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도 확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각 국의 공정거래제도가 그 나라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흐름속에서 형성되어 왔겠지만 한국의 공정거래제도는 국민들의 공정거래 당국에 대한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폭넓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관련 법률만 해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카르텔일괄정리법 등 세계에 유래가 없는 7가지 법률이 경쟁정책 당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입법의 움직임도 있어 관련 법률도 앞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하나의 독립된 局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소비자보호기능이 제 역할을 하자면 소비자관련 법규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

이는 세계의 여타 경쟁당국과 비교해 볼 때 유래가 없는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국민과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노력과 정책 방향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법률들을 관장하고 관련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다양한 기능은 주지하다시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경쟁정책당국자로서의 경쟁 촉진시책의 정책당국이다.

둘째는 사업자의 일방적 약관이나 표시광고와 둘러싼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할부거래, 방문판매 등 특수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등 소비자보호시책의 당국으로서의 기능도 매우 주요하고도 큰 기능의 하나가 되고 있다.

셋째는 독립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항을 통하여 대금지급, 물품수령 등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하여 이들을 보호한다는 등의 독립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시책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억제시책을 통하여 국민경제가 균형 있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의 유래가 없는 광범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당국이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이해와 지원속에 성장해온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정책개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정책은 어떠해야하며 기능은 어떻게

발전되어 가야하는가에 대해 항상 깨어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과거 경제기획원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듯이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 발상으로 공정경쟁의 촉진을 통하여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기존의 주어진 틀을 뛰어넘는 사고를 기대한다.

특히 위원회는 경쟁촉진시책에 크게 업무의 비중이 두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자유로운 경쟁속에서 창의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된다. 산업별 규제완화는 88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주도한 사업이고 현재 국무조정실에 담당기관이 있지만 공정위에서는 계속해서 규제완화를 통해서 산업의 경쟁체제구축에 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당국으로서 각종 법률과 제도 또는 행정조치들이 경쟁저해적 요소를 갖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의 경제 질서가 경쟁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86년에서 2000년까지 무려 619건이나 되는 경쟁 제한적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방지했다. 세계 각국 중 정식으로 캐비넷 미팅에 멤버가 된 경우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타국과 다른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빠른 고도성장과 정에서 잉태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치유해야 하는 우리나라 경제 실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선진국과 다른 이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개발과 집행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에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던 소위 빅딜정책에 대해서 공정위는 그것이 경쟁정책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면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3. 전문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공정위가 국무회의에 참여 법령 제·개정 등에 직접 간여하는 기회는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장점도 되지만, 반면에 공정위가 행정부의 일원으로 정부 여타정책의 희생물이 되거나 통치권자의 입김이 미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즉 공정위가 독립규제위원회로서 보다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혹 저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며 최근 몇 가지 사례에서 그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는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독립성 확보의 첫 번째 관건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 임기의 철저한 보장이 될 것이다. 또 위원회 내부에서도 현실적으로 위원장이 장관급이고 부위원장이 차관급, 상임위원들이 1급인 상황에서 의사결정은 아무래도 윗선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을 것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공정거래 상임위원들은 차관급 정도로 격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감사원의 감사위원, 일본 공취위의 상임위원들이 그러하듯이). 그리고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가장 선임인 위원이 위원장을 보좌하여 전원회의가 아닌 경우에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하면 될 것이다.

아울러 상임위원들의 격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내부 전문가에다 경제학자, 법조인

출신 등 외부의 전문가들을 더욱 보강하여야 된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내신 분으로서 특히, 회사법, 경제관련법 사건을 많이 다루신 분 중 한 분을 법원에서 파견 받고, 검사장급에서도 파견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유명 경제연구소장이나 경쟁정책과 관련해 깊은 학회의 대표급에 있는 교수님들이 안식년이나 파견 등을 통해 상임위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상임 위원 수를 줄이고 상임위원제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

세계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이제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보는 무한 경쟁은 가속되고 있다. WTO와 OECD에 가입한 우리 나라는 모든 법규와 행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국제적으로 공통된 공정거래규범이 형성되어 가고 있고 우리 기업에 대해서 외국 공정거래법의 적용 예가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며 국내외에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우리의 공정거래법 적용도 점차 범위가 넓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우리 공정거래제도의 운영이 세계 각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과 대비하여 볼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은 있는 것인지, 논리적 근거가 없다면 우리의 법운영 관행을 바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문제시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우리만이 벌하고 있는 경우가 없는지 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연구하거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것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선입견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은 크고 위상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데 비하여 법집행의 정치성은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앞으로 많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서 많은 전문인력들의 소요가 예상 되는데, 공정거래 관련 연구를 하는 학계가 좀 더 폭이 넓어져야 할 것이고, 변호사들의 숫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변호사들을 대신하여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정거래사제도를 국가 공인제도를 통해 양성함으로써 수 많은 전문가를 배양해야 될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제도가 보다 실효성을 가지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분야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많다고 생각된다.

한편, 한국공정거래협회가 민간의 자율규범의 확대를 통해서 민간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업계의 건의를 하는 창구로서의 보다 적극적, 능동적 역할을 해야할 것으로 보아진다.

(1) 법집행 대상범위의 대폭축소가 바람직함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건들이 파일링 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중 우리나라의 경고, 시정명령 이상으로 정식처리 되는 것은 극히 제한된 숫자라고 듣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접수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 감사를 의식하여 신고건에 대해서 거의 의무적으로 처리되는 듯 하다. 따라서 사건처리건수가 매우 많은 편이다. 그러나 사건 신고는 어디까지나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단서의 제공이지 처리해야 할 민원은 아니라고 본다. 고도의 경쟁정책을 다

루는 공정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다룰 사건은 경쟁정책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경쟁법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 또는 소규모사건, 경미한 사건 등 법적용 대상은 되지만 중앙행정기관에서 다룰 실익이 없는 건 등은 각하나 기각처리 해야한다고 생각이 된다.

다만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사건에 대한 심의 과정이 매우 길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토론하고, 분석하며 엄청난 파장을 초래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불공정거래 규제 건수는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고 시장의 경쟁질서와 관련된 기업결합심사, 카르텔에 대한 단속 쪽에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책 재검토 필요

소수지분으로 많은 계열사에 대한 선단식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규모가 일정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서 상호출자의 제한, 채무보증의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대해서는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상호출자는 상법에도 금지되어 있고, 계열기업군에 대한 채무보증은 외환위기 이전 대마불사의 신화 속에 잘못된 금융관행에서 나온 것이다. 자사에 특별히 이익이 되는 등 사유가 없이 단지 계열사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보증을 한다면 그 결정을 한 이사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관행이 없어지고, 타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은 자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제 시장에서도 이사회에서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잘 되어 있는 편이다. 따라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왜냐하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보증제한은 큰 이슈는 아닌 것 같다.

한편 출자규제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달라진 환경속에서 행정규제가 정당성을 갖고 합리성을 확보하자면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에게도 공히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외국기업의 국내법인들에 대해서도 국내의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규제를 하려면 명확한 규제의 근거를 외국기업에게도 설명하고 국제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만약,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못하고 국내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다면 왜 국내기업만을 규제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국내기업의 경우 기업의 행태나 지배구조와 관계 없이 단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기업집단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의 근거가 특정인이 소액 지분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한다는 말을 혼히들 한다. 그렇다면 단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규모를 가진 것이 규제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이 아니라 소액지분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고, 또 나아가서 어느 정도의 지분이 바람직한지, 또 어떻게 지배하는 것이 나빠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 그런 규제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황제식 경영이 문제면 황제식 경영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어떤 행위를 규제할 것

인지에 대해 기준을 세워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규제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최근 외환위기 이후 소위 시장이라는 제도가 매우 발달되어 행정당국이 행정규제로 기업을 규제하는 것보다 시장의 반응이 훨씬 강력하고도 무서운 것으로 판단된다. 회사내의 조그만 의사결정도 잘못되어질 경우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거의 실시간으로 시장에 알려지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에 실시간 반영된다.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신용평가의 하락으로 어떤 기업도 시장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 금새 퇴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기업규모가 우리나라에서 1, 2등을 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 퇴출 되었으며, 또 그 다음은 누구나 하는 식으로 위기를 느꼈던 현실에서 단지 기업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웬지 공허한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외환위기 이후 소위 대마불사라는 신화는 확실히 사라졌다고 본다. 이것은 실제 경험현장에서 느낀 뼈아픈 경험이다. 요즘 기업은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느냐, 투자는 줄이고 구조조정으로 현금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환율이나 금리, 국제경기 등 어떤 변수가 요동을 치더라고 생존할 수 있는 경영이 우선이다. 기업들의 이러한 경영형태는 재계서열 1, 2등 기업군의 몰락과 30대기업집단의 절반 이상이 법정 관리, 회의 등으로 내몰리고 그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위험신호를 받지 않은 기업들이 없을 정도이어서 이에 경영의 방향은 우선 생존해야한다는 절박성이 최우선이다. 당분간 상당한 기간동안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일부 이익을 낸 기업들도 더욱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이런 경영은 투자를 극히 축소하게 되는

것으로 개별기업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성장률의 둔화, 그에 따른 고용의 악화, 나아가 이것이 계속될 경우에 성장잠재력의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가 종래에 볼 수 없었던 몇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우리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경상수지의 계속적 흑자가 그것이다. 이는 환율이 시장을 잘 반영하여 적정수준에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따른 수출증가와 수입감소 효과도 있지만 특히 수입부분에서 투자감소로 자본재수입의 감소가 매우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지속은 우리 경제의 장기활력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금리의 선진국 수준대로의 하락이다.

종래 12~15%하던 금리를 아무리 노력해도 한자리 숫자로 내리기 어려웠던 것이 불과 외환위기 직전까지 계속되었는데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금리상승 이후 금리는 매우 안정되어서 최근 회사채 금리는 6~7%대까지 떨어지는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 또한 기업의 투자 위축에 따른 대출수요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투자가 계속 축소된다면 우리 경제의 장래가 걱정이 된다.

이와 같이 최근의 경제여건을 본다면 기업의 투자로 인한 장래성장 잠재력의 확충보다는 이 완된 금융정책으로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소비의 증가,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의지에 의한 실업대책 경비의 증가, 건설경기 진작, 내수 진작 등 주로 소비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로 인하여 외국인들의 주식투자증대로 인한 주식시장 증대, 자산효과로 인한 소비증가 등으로 인해 경기가

지탱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듦다.

(3) 부당내부거래 규제와 관련

부당내부거래제도에 대해서 특정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하게 되면 일단은 부당지원을 결정한 임원들의 그 회사에 대한 배임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하여 부당지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당지원으로 인하여 경쟁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오히려 퇴출 위기에 놓인다고 할 때 경쟁질서를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규제하는 실익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계열사에 대해서 단순한 지원행위는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계열사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원하는 회사의 임원은 그러한 부당한 지원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된다. 여기까지는 공정거래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경쟁사업자가 부당한 지원을 받은 계열회사와 더욱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면은 그것은 경쟁의 감소가 아니라 경쟁의 증진이 된다. 여기까지도 공정거래법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가 단순히 특정 재벌회사의 계열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지원을 받은 회사의 도전에 직면하여 시장에서 퇴출 될 위기에 빠지고 이에 따라 경쟁력이 없는 회사가 오히려 생존하면서 시장에서의 비능률을 야기하고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퇴출 당할 위기에 있다면 이때 비로소 공정거래법은 그러한 시장의 바람직하지 못한 경쟁질서의 변화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원회의 심결사례 중 당해 시장의 경

쟁질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토가 별로 없거나 그런 검토가 부실한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다. 또한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 등을 해석할 때에도 합리적인 분석이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다. 예컨대 계열증권회사의 5년 만기 후순위채를 연율 15%의 이자를 받고 지원해 준 것이 잘못이라고 하였는데 당시 우리 나라에는 5년물의 상품이 없었으므로, 3년물의 회사채 금리가 약 20%에 가까운 것을 비교해서 15%가 지나치게 낮다고 부당지원이라 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 그 후 금리는 급격히 떨어져서 지난해부터 회사채금리는 6~7%로 아직도 상황기간이 2년 이상 남은 15%의 후순위채는 오히려 이를 매입한 쪽에서 현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아직도 계류중인데, 지금에 와서 공정위는 본 건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하다.

더군다나 부당내부거래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지원해준다는 단순한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지원해줌으로 해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가 되어 최종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부당성을 검증하는 논리적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외국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규제는 어떠한가? 부당성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해보고 우리 나라의 법 운영에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5. 자율준수 문화의 정착

기본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의 추구보다 법 위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하거나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은 자사에 해당되는 법 위반 가능성에 있는 분야가 있는지 어떻게 법 위반 발생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게 되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공정거래문화가 정착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부터 되어진다면 브랜드가치는 올라가고 그 기업의 주식가격 상승 등 기업가치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법질서를 자진하여 준수하려는 노력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자율준수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공정거래협회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주고 이런 사회분위기가 마련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공정거래질서를 빠른 시일내에 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협회 등 관련기관들이 노력할 부분으로 남겨두고 공정위는 보다 정책적인 면에 대해 힘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공정**